2019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91억 9백만원**과 동일함.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9,109	9,109	0	0
세외수입	경상적	1,200	1,200	-	-
	임시적	1,925	1,925	-	-
보조금		2,292	2,292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692	3,692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7,690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2,317억 2천만원 대비 16.6% 증액(5,372억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3,231,721	**3,769,077**	537,356	16.6%
행정관리	소 계	254,861	**256,421**	1,560	0.6%
	행정운영경비	123,333	**123,333**	-	-
	사 업 비	131,528	**133,088**	1,560	1.2%
교 부 금		2,976,860	**3,512,656**	535,796	18.0%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 3조 41억 2천 5백만원 대비 5,373억 5천 6백만원(17.9% 증)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4.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3,004,125**	**3,004,125**	**3,541,481**	**537,356**	**17.9%**
조정교부금	2,976,860	2,976,860	3,512,656	535,796	18.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8,000	18,000	18,892	893	5.0%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142	3,142	3,483	340	10.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4,352	4,352	4,564	212	4.9%
시청사 청소관리	1,771	1,771	1,886	115	6.5%

Ⅱ. 검토의견

1.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민선 7기 2단계 조직개편(신설 10개 부서)으로 청사내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무교별관(6층, 12층)을 추가 임차하고,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과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당초 예산(180억원) 대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8억 9천 3백만원(총3건)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8,892,488	17,999,835	892,653
사무관리비	6,942,753	6,645,695	297,058
공공운영비	8,568,644	8,568,644	0
국외업무여비	60,000	6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0
특정업무경비	270,000	270,000	0
시설비	2,660,318	2,064,723	595,595
감리비	7,000	7,000	0
기타자본이전	303,773	303,773	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주요내역	추경액	추경사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6,645,695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무교별관 추가 임차(2개층)	297,058	임차료 및 관리비
	시설비	2,064,723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150,000	용역비
			시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445,595	보일러 등 교체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시청사 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정비와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 기능을 유지하고, 청사임차, 공기질 개선, 녹지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중 '무교별관 추가임차'는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및 관리비로 7개월분 2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무교별관 임대료의 경우 5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7개월분에 대해 유상으로 임차함. (장기 임차(12개월) 10개월치 임차료만 부과하기로 계약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내부수리 기간(3개월) 추가로 무상 임차함)

〈 추경 세부 내역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민간건물 임차계약

- 대상건물 :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별관, 중구 무교로 21)
- 임차기간 : '19.1 ~ '23.12
- 임차면적 : 944.96㎡ (6층:563.47㎡, 12층:381.49㎡)
- 임 대 료 : 297,058천원 (임대료:197,578천원, 관리비:99,480천원)
  - ▶ 계약단가: 월임대료 29,869원/㎡, 월관리비 15,039원㎡(부가세포함)

○ 2019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본청 및 서소문별관(923.78㎡) 등에 대해서 5개기관(신한은행 · 우리은행 · 서울시우회 · 푸르메재단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유상임대 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옛 시장실을 서울도서관(2012.1.26.개관 · 7,191.56㎡)으로 그레뱅 서울박물관(2015.7.29.개관 · 4,444.62㎡)의 공공업무시설을 박물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시청사 유상 임대현황〉

(단위 : 천원, '19.5.31. 기준)

연번	재산의 표시		사용 현황					
	주 소	면적 (㎡)	사 용 자	사 용 료	사용기간	조건	임대 방법	근거
1	세종대로 110	524.77	신한은행	374,364	'18.11.16~ '19.11.15	시금고	수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3호
2	덕수궁길 15	219.47	신한은행	53,019	'19.1.1~ '19.12.31	시금고	수의	상동
3	세종대로 110	1.6	우리은행	784	'18.11.23~ '19.11.22	ATM	수의	상동
4	덕수궁길 15	1.75	우리은행	425	'19.1.1~ '19.12.31	ATM	수의	상동
5	덕수궁길 15	138.54	서울시 시우회	23,215	'19.2.4~ '20.2.3	발간실	수의	상동
6	세종대로 110	37.4	푸르메재단	9,998	'19.1.1~ '20.10.31	카페 (복지사업)	수의	장애인복지법 48조1항
7	세종대로 110	2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581	'18.11.21.~ '19.11.20	전기차 충전시설	수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3호

□ **청사 기능전환 현황**

○ **서울도서관(옛 시장실 등 → 도서관)**

- 규　　모 : 지하4층/지상4층, 연면적 7,191.56㎡
- 개　　관 : 2012.10.26 개관
- 주요시설

층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지상 5층	351.33	공공업무시설	351.33	공공업무시설(도서관)	
지상 4층	1,710.82	공공업무시설	1,710.82	공공업무시설(도서관)	
지상 3층	1,725.46	공공업무시설	1,725.46	공공업무시설(도서관)	
지상 2층	1,539.38	공공업무시설	1,539.38	공공업무시설(도서관)	
지상 1층	1,864.57	공공업무시설	1,864.57	공공업무시설(도서관)	

○ **그레뱅서울박물관(공공업무시설 → 박물관)**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444.62㎡
- 개　　관 : 2015. 7.29 개관
- 주요시설

층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지하층	465.84㎡	공공업무시설	465.84㎡	박물관	
1 층	940.91㎡	공공업무시설	940.91㎡	박물관	
2 층	940.91㎡	공공업무시설	835.31㎡	박물관	
3 층	940.91㎡	공공업무시설	940.91㎡	박물관	
4 층	890.70㎡	공공업무시설	890.70㎡	박물관	
5 층	239.31㎡	공공업무시설	114.77㎡	박물관	
옥탑층	34.80㎡	연면적 제외	34.80㎡		
합계	4,418.58㎡		4188.44㎡		
부1 층	26.04㎡	경비실	26.04㎡	경비실	
총계	4,444.624㎡		26.04㎡		

○ 행정국은 서울시의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공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임차(944.96㎡)하려는 것이나, 서울시가 기능을 전환한 도서관(7,191.56㎡) 및 박물관(4,444.62㎡)의 경우만 당초 목적대로 청사로 계속사용 해 왔다면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 자체공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추가사무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특정기관과 사업소에 시혜적으로 공간을 사용한다는 특혜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 및 유상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적정성과 사용료 감면의 특약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예산 낭비 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청사별 사용현황,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청사 건립의 필요성 등이 감안된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사별, 직급별(직무)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배치운영중인지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없이 청사의 사무공간을 운영중에 있는 바, 청사 임차에 앞서 청사별, 직급별 효율적 배치 여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청사별 총면적과 근무인원에 대한 통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각 청사내 총면적 대비 직급별 면적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별표 1〕〈개정 2012.3.15〉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단위 : ㎡)

구분 / 기관별	시장실	부시장실	1급	2~3급	과장	5급 이하
시본청	165.3	99	50	33	17	7

※ 시장실, 부시장실은 비서실 면적 포함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이하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인 경우 면적 =0.8㎡×사용인원
		4~2.4㎡/명	2.6~1.5㎡/명	2~1.2㎡/명	1.6~1㎡/명	1.2~0.9㎡/명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초과			
		0.43㎡ / 명	0.40㎡ / 명	0.33㎡ / 명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명	2~3명	4명 이상			
		15.12㎡ / 명	11.52㎡ / 명	8.64㎡ / 명			
자 료 실		(0.3~0.4㎡) × 공무원 수					
창 고		0.72㎡/명 ~ 0.85㎡/명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청사(자체청사, 임차청사) 면적 및 근무인원〉(2019.5 기준)

구 분	청 사 명	청사 면적	근무인원	임대료	비고
자체청사	본 관	90,743㎡	2,021명		
	서소문청사(1~5동)	45,196㎡	1,742명		
	남산별관1	7,322㎡	65명		
	종로소방서	1,393㎡	58명		
임차청사	무교별관 (3,4,6~9,12,14층)	10,170㎡	650명	3,906백만원	
	청계별관 (4~7층)	4,152㎡	199명	1,715백만원	
	서울로운영사무실 (대우재단빌딩)	211㎡	16명	68백만원	
	전국체전기획과 (한화서소문빌딩)	893㎡	26명	250백만원	
계		160,080㎡		5,689백만원	

○ 또한, 서울시는 최근 민간전문가(자문관 등)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임의규정)고만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체청사(본관 및 서소문1동)내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닌 민간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산운용 효율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법적지원 의무가 없는 서울시 청사의 무상 대부 현황을 살펴보면, 본관과 서소문청사에 대해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민간전문가 현황 자체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 바,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의 이용현황 파악과 함께 청사임대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관 실국와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 및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원 외 인원(자문관 등) 청사 사용 현황〉

(2019.05 기준)

구분		명칭	면적(㎡)	주관부서
본관	3층	협치자문관	28.2	민관협력담당관
	5층	총괄건축가	36.2	도시공간개선단
		자치분권자문단장	28.9	협력상생담당관
		먹거리정책자문관	20.7	식품정책과
	6층	민생경제자문관	16.8	경제정책과
		노동협력관	16.8	노동정책과
		농업자문관	15	도시농업과
	7층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1	80.2	자치행정과
	8층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2	121.1	자치행정과
	10층	서울안전자문단장	12.5	안전총괄과
	11층	3.1운동기념사업추진실	47.9	복지정책과
서소문1동	3층	서울역사자문관	17.6	역사문화재과
	4층	서울공예박물관 총감독	25	서울공예박물관
	5층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19.8	디자인정책과
	11층	기후변화협치자문관	17.8	기후대기과
	14층	혁신교육지구협력관	15	교육정책과

○ 둘째, 환경개선, 유휴공간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무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효율적 청사 확보를 위한 '청사건립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음.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14,723	2,064,723	150,00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시 설 비)	2,214,723	2,064,723	150,000	◦ 수수료 : 150,000천원

□ 사업개요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사업내용 :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확보(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사업위치 : 본청 인근 지역
- 내 용 : 건물매입, 기부채납부지 활용 신축, 서소문청사 증축 재추진 등
- 추진절차 :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추진현황

- ′15.05.31 : 정동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추진
- ′16.09.07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부결(제270회 임시회)
- ′18.12.01 : 청사인근 청사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시행(서울연구원)

○ 서울시의 부족한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사 임차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2016년 59억 7천 2백만원 → 2017년 59억 7천 2백만원 → 2018년 58억 5백만원→ 2019년 65억 3천만원)되고 있어 청사 공간의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임차청사 임차료('18년도)〉

구 분	청 사 명	임 차 료	비고
임차청사	무교별관	3,906백만원	4,747백만원 ('19년 예상임차료)
	청계별관	1,715백만원	1,715백만원
	서울로운영사무실(대우재단)	68백만원	68백만원
계		5,689백만원	6,503백만원

○ 다만, 본 타당성 조사를 건물매입, 신축, 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르면, 건축비 및 시설비 등은 사업비로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포함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셋째, '시청사 보일러 등 저녹스(질소산화물)버너 교체 개선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여도가 높은 난방·발전 부문의 공공건물 보일러 등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9대)하고,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2대)하려는 사업으로 녹스 배출기준 강화안에 따른 조치로 보여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510,318	2,064,723	445,595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시 설 비)	2,510,318	2,064,723	445,595	◦ 시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445,595 - 본관(보일러 5대) 84,200 - 서소문(보일러 2대, 냉온수기 4대) 74,745 - 서소문 노후보일러 교체(2대) 286,650

☞ NOx 배출기준 강화(안)

구 분	현 행	⇨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	60 이하

친환경콘덴싱보일러(저녹스)란?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1등급** 및 **친환경 마크를 부여** 받은 보일러
- 현재 지원하는 친환경마크 인증 친환경보일러 모델은 5개회사 33종 제품임

※ ㈜귀뚜라미(8종), 린나이코리아㈜(1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6종), ㈜경동나비엔(15종), ㈜알토엔대우(3)

※ 서울시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도모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서도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시청사 보일러 내구연수(11년)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당겨 버너만을 교체하는 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저녹스보일러 교체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님.

○ 보일러 내구연수 : 11년 (근거 : 조달청 내용연수)

연번	청사명	장비 종류	용량	버너 제작사	사용 연료	설치 년도	내용 연수	소요예산 (백만원) 견적	교체 항목
1	본관	보일러	0.8톤	㈜부스타	LNG	'12.8	11년	14.0	버너
2	〃	보일러	1.5톤	〃	LNG	〃	11년	15.7	버너
3	〃	보일러	1.5톤	〃	LNG	〃	11년	15.7	버너
4	〃	보일러	2.58톤	〃	LNG	〃	11년	19.4	버너
5	〃	보일러	2.58톤	〃	LNG	〃	11년	19.4	버너
6	〃	보일러	0.4톤	〃	경유	〃	11년	-	제외
7	서소문	보일러	1.5톤	㈜대열보일러	LNG	'10.11	11년	12.7	버너
8	〃	보일러	3톤	〃	LNG	'05.9	11년	170.0	보일러
9	〃	보일러	2톤	〃	LNG	'09.9	11년	14.1	버너
10	〃	보일러	1톤	〃	LNG	'08.10	11년	116.0	보일러
11	〃	냉온수기	400RT	㈜수국	LNG	'10.4	9년	12.0	버너
12	〃	냉온수기	400RT	〃	LNG	'10.4	9년	12.0	버너
13	〃	냉온수기	400RT	〃	LNG	'10.4	9년	12.0	버너
14	〃	냉온수기	400RT	〃	LNG	'10.4	9년	12.0	버너

내용연수

[시행 2018.10.5.]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9.27., 일부개정]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366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9
380	40102001	연관보일러	11

○ 또한, 저녹스 교체의 경우 장비와 버너의 호환 및 대기배출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장비제작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 수의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일러 및 저녹스 교체 비용을 제조사별 견적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저녹스보일러 교체 및 설치에 친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중 성능과 가격 등의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시청사 청소관리

○ 현재 시청사 건물 내·외부, 서울광장 등의 청소는 공무직 및 촉탁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 인상분 3.4%를 반영했으나,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18.12.14)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9.7% - 시간급 : 기존 9,650원→10,582원)과 위생수당(30,000원)이 신설되어 기정예산 13억 4천 3백만원 대비 1억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시청사 청소관리 사업은 시청사 내 청소작업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청사'를 구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방문시민들의 청사이용 만족도를 제고를 위한 것임.

〈시청사 청소관리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58,134	1,343,108	115,026	
시청사 청소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8,134	1,343,108	115,026	◦ 월 급여 상승분: 69,902천원 ◦ 수당 상승분(위생수당 신설 등): 45,124천원

□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886,305	1,771,279	115,02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8,134	1,343,108	115,026
사무관리비	252,911	252,911	0
공공운영비	172,960	172,96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300	2,300	0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청소대상 : 시청사 159,748㎡
- 본청사(도서관 포함), 서소문청사, 남산별관, 송월동 차량지원실, 서울광장
○ 청소인력 : 총116명(공무직 79명, 촉탁직 37명)
○ 작업내용 :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유리창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서울광장 청소 등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연중 지속)

❍ 다만, 시청사 청소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공무직·촉탁직)의 경우, 임금협약을 매년 연말(2019년→2018년12월14일 협약)에 체결하고, 촉탁직(37명) 인력 편성과 운영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재무과(포괄예산)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 종합적인 관리에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인력 관리 등을 특정실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예산 편성 전 임금협약을 마쳐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당초 2018년 공무직 정원(1,735명) 기준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편성하였으나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240명) 등 공무직 정원 및 현원의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정원 증가 예상분의 90% 기준으로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경비' 3억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482,719	3,142,519	340,200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482,719	3,142,519	340,200	- 개인자율포인트 : 1,250천원 * 2,135명 * 0.9 - 2,168,750천원 = 233,125천원 - 단체보험료 : 550천원 * 2,135명 * 0.9 - 954,250천원 = 102,575천원 - 다자녀지원 : 2,500천원 * 2,135명 * 0.45% - 19,519천원 = 4,500천원

○ 동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행정국은 2018년 7월 예산 편성시 공무직 정원(1,735명)을 기준으로 공무직 선택적복지 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공무직 정원(2,026명)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음.

※ '19년 4월말 기준 정원 2,026명(상수도 제외), 하반기 정원 증가 예상분 약 109명 포함 총 2,135명

구 분	기정예산 (배정인원)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산출내역*
계	3,142,519 (1,735명)	3,482,719 (2,135명)	340,200 (400명)	기정예산 기준 인원 '18년 정원 **1,735명** → '19년 정원 2,026명(기정예산액 대비 291명 증가) + 하반기 증가예상분 109명 → **2,135명**
개인자율 포인트	2,168,750	2,401,875	233,125	1,250천원 * 2,135명 * **0.9** - 2,168,750천원
단체보험료	954,250	1,056,825	102,575	550천원 * 2,135명 * **0.9** - 954,250천원
다자녀지원	19,519	24,019	4,500	2,500천원 * 2,135명 * **0.45%** - 19,519천원

*** 산출내역 : 0.9〔정원대비 현원률(불용률 0.1)〕 / 0.45%(최근 3년간 다자녀 포인트 배정 비율)**

○ 다만, 서울시 예산 편성이 매년 7월에 편성되어 실제 지원대상과 불일치 할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나,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예상 할 수 있는 바, 이를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써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행정국에서는 공무직 전환자 등에 대한 예측에 있어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금번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등에 관한 조례안」 이 제출되어 있는 바, 행정국은 이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정예산(2조 9,768억 6천만원) 대비 5,357억원 9천 5백만원(15.3%)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지난연도 보통세 미반영분”(346억8천7백만원)과 “2018년도 보통세 결산 차액의 22.6%”(4천26억9천1백만원), “20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11%→15%, 4% 인상)의 22.6%”(984억1천7백만원)’를 반영하려는 것임.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512,655,938	2,976,860,105	535,795,833	
자치구조정교부금	3,512,655,938	2,976,860,105	535,795,833	◦ 증가액 535,795,833천원 - 19년도 본 예산 미반영분(지난년도 보통세의 22.6%) 34,687,610천원 - ’18년도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 402,691,099천원 - ’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11%→15%)의 22.6% 98,417,124천원

○ "2019년도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경우는 올해 지방소비세가 기존 11%에서 15%로 인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교부하려는 것임.

※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

- (1단계) 지방소비세율 11%(현행)→15%('19년)→21%('20년) 인상

▸ 소비지출분 : 5%(현행)→9%('19년)→15%('19년)각각 인상될 것으로 예상

- (2단계) 국세와 지방세 제도(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달성) 및 지방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추가적 세수 확충방안 검토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 율 인상전 (A)	세율 인상 후				누적 증가 (C-A)
		2019년		2020년		
		세액(B)	증가액(B-A)	세액(C)	증가액(C-B)	
소비지출분(5%)	5,579	10,115	4,536	17,125	7,010	11,546
취득세보전(6%)	8,013	8,013	-	8,013	-	-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서울시는 2년간 1조 1,546억원 세입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는 '19년 4,536억원, '20년은 7,010억원(총 1조 1,546억원) 증가

○ 2018년도 보통세 결산 차액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치구의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차차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는 방안 등 조례 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2019년도 지난년도 보통세의 22.6%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서울시 재정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세 세입에 대한 추계액을 누락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자의적인 예산 운영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세 세입에 대해 누락없이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충족율이 106.2%에서 112.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5년 조례 개정 당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목표에 맞추어 정한 보통세의 교부비율(22.6%)이 적정한지, 서울시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조례 추진 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의회 협의 없이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2019년 조정교부금 추경액 자치구 배분(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당초예산	'19년도 추경예산	증가액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합 계	2,976,860	3,512,656	535,796	당초 자치구별 충족도	본예산 배분후 충족도	추경 배분후 충족도
일반조정교부금	2,679,174	3,161,390	482,216	70.8	106.2	112.2
종로구	52,556	63,330	10,774	81.4	101.9	105.9
중 구	17,774	23,041	5,267	94.7	101.8	103.9
용산구	58,704	70,250	11,546	78.5	101.6	105.8
성동구	98,765	116,412	17,647	63.7	102.4	108.8
광진구	110,472	130,268	19,796	62.3	102.2	108.9
동대문	128,343	150,729	22,386	57.2	101.9	109.0
중랑구	149,073	174,887	25,814	52.7	102.3	110.2
성북구	166,561	195,588	29,027	50.2	101.6	109.8
강북구	140,652	164,998	24,346	53.2	102.1	109.9
도봉구	141,506	166,055	24,549	51.1	102.0	110.1
노원구	207,882	243,657	35,775	43.0	102.2	111.6
은평구	155,838	182,722	26,884	55.2	102.4	109.9
서대문	119,728	140,484	20,756	58.9	103.3	110.4
마포구	87,229	103,757	16,528	72.9	101.7	106.7
양천구	127,957	150,533	22,576	58.3	102.8	110.0
강서구	150,160	177,009	26,850	61.0	101.9	108.6
구로구	137,306	161,364	24,057	56.0	102.1	109.5
금천구	97,619	114,957	17,338	61.9	101.7	108.3
영등포	76,283	90,934	14,651	77.8	102.0	106.3
동작구	112,919	132,824	19,905	61.7	102.5	109.1
관악구	151,772	178,318	26,546	54.5	101.7	109.3
서초구	15,523	21,042	5,519	97.9	102.4	103.9
강남구	-	-	-	182.3	182.3	182.3
송파구	55,648	67,968	12,320	87.4	102.2	105.2
강동구	118,904	140,264	21,359	62.4	101.6	108.1
특별조정교부금	297,686	351,266	53,580			

※ 강남구 제외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배분전 64.7% 배분후 102.1%, 추경후 108.3%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인 추진

○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사업은 찾동 2.0의 핵심사업으로 시민찾동이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부여하는 한편,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2018년 12월 완료)과 지원근거(찾동 제정 조례 '19.5.16공포시행)에 따라 '사무관리비' 2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은 이웃의 어려움과 지역의 불편함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골목단위의 일상적인 주민 연대 활동을 위한 것으로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시민찾동이란? 지역과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는 골목의 주인인 주민

○ **목표인원 : 20만명(2019년)** ※동별 500명

○ **추진내용**

- (발굴) 다각도의 홍보 및 다양한 기획을 통한 주민 발굴
- (활동내용) 생활민원 및 어려운 이웃을 동주민센터에 알리기
- (활동신청) 간단한 오프라인 서명 또는 서울시민카드 온라인 앱을 통한 온라인 가입
- (발견된 문제의 신고) 어려운 이웃이나 생활민원 제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활동지원) 서울시민카드에서 신분증 구현, 서울시민카드 특별혜택 부여, 시민찾동이를 상징하는 배지, 가방홀더 등 물품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추가경정요구(안) 〉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4,563,777	4,351,777	212,00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 공 적 추 진	4,563,777	4,351,777	212,000	◦(통계목)사무관리비 212,000천원 - 424개동 * 250명 * 2,000원 = 212,000천원 (동별 500천원 교부)

○ 행정국은 시민찾동이 활동 지원은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시민찾동이로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구(동)별 실정에 맞는 지역 밀착형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배지, 열쇠고리, 내장고 자석 등 시민찾동 상징표식을 위한 시안 개발

○ 다만,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바,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위한 중간매개 역할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찾동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한편, 시민찾동이 홍보를 위한 배지 등 활동 지원 물품구매와 제작(디자인)을 각 자치구별로 진행 예정인 바, 예산 절감과 디자인의 심미성과 각인성을 위해 일괄 구매 후 제작하여 배부하는 방식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